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박춘희 의원
- 제안일자 : 2024. 9. 2.
- 회부일자 : 2024. 9. 5.
- 상정일자 : 2024. 9. 5.

2. 제안이유

- 평창군민의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재능나눔 사업 추진(안 제5조)
- 재능나눔 사업의 위탁(안 제6조)
- 재능나눔 활성화 포상(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서 지자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로 수동적인 활동이 아닌 자기 지향적인 자원봉사 참여가 증가하고 적극적 시민성¹⁾을 강조한 지역사회 회복과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가 추구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사회 전체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재능나눔을 활성화하여 관내 주민 간의 건강한 유대관계 형성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에서 ‘재능나눔’의 의미를 ‘각 분야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

1) 적극적 시민성이란 법을 잘 지키고 좋은 이웃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좋은 시민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책임 인식과 지역사회 멤버십을 가지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활동을 부각시키는 실천 지향적 개념을 일컫음(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층에 제공하는 행위' 로 하여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과 의미 구
분이 모호하게 되지 않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사업추진)에서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 >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3. 재능나눔 관련 단체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안 제6조(재능나눔사업의 위탁) 및 제7조(포상)에서는 재능나눔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대상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5. 종합검토의견

- 우리 군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범규범은 기 제정된 「평창군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으나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귀촌 및 귀농 등으로 타 지역 전입자들이 많은 우리 군의 특성상
재능나눔 활동을 통한 주민 간의 유대관계의 형성과 따뜻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은 충분히 가치 있다 생각되므로 관련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재능나눔 활동을 차별성이 있는 전문적 봉사로 구분하여 장려하려는 것으로, 독립적인 조례 입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02.06.04 조례 제1702호
(전부개정) 2007.12.21 조례 제18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군수가 비영리법인에게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④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가입 후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료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장은 제7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 결산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